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신·출산 진료비의 사용 범위를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나 약제·치료재료에서 모든 진료나 약제·치료재료로 확대하고 진료비 지급액을 60만원 등에서 100만원 등으로 늘리며, 다리 의지(義肢) 소모품(다리 의지 소켓 및 실리콘라이너)에 대해서도 해당 다리 의지의 내구연한 내 1회에 한하여 의료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전·후방보행보조차”를 “전·후방보행차”로, “견갑”을 “어깨”로 바꾸는 등 잘 쓰지 않는 어려운 용어나 전문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6. 24. ~ 8.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와 그 산모의 1세 미만인 자녀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진료(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진료”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출산 전후 산모와 그 산모의 1세 미만 자녀의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를 “약제·치료재료(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6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140만원”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후방보행보조차”를 “전·후방보행차”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모품”을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자목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정신병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전단 및 다목 전단 중 “전·후방보행보조차”를 각각 “전·후방보행차”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보조차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말한다)”을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보행차”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보조기기 소모품에 대한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해당 보조기기 소모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 1)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구입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지급
- 2) 다리 의지 소켓 및 실리콘라이너: 구입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지급하되, 해당 다리 의지의 내구연한 내 1회에 한하여 지급

별지 제1호서식 뒤쪽 ⑦·⑧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제4호 중 “365일을”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③ 처방 보조기기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④ 검사결과란 중 “견갑{SCAPULA}”을 “어깨”로, “족관절{ANKLE JT.}”

을 “발목관절”로, “수정바델지수(MBI) 검사”를 “일상생활동작검사[수정 바델지수(MBI)검사]”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을 “다리 의지는 일반형 소켓으로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리콘형 소켓은”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전·후방보행보조차”를 “전·후방보행차”로 한다.

③ 처방 보조기기	[] 자세보조용구	[] 몸통 및 골반 지지대 []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 머리 및 목 지지대 [] 다리 및 발 지지대
	[] 이동식전동리프트	[] 욕창예방매트리스	[] 욕창예방방석
	[] 맞춤형 교정신발류	[] 전방보행차	[] 후방보행차
	[] 의지·보조기	유형: []우 []좌	
	[] 다리 의지 소모품 ([] 우 / [] 좌)	[]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체 ([] 일반형/[] 실리콘형) []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교체 [] 종아리 의지 소켓 교체 ([] 일반형/[] 실리콘형) []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교체 []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교체	

별지 제14호의5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전·후방보행보조차”를 “전·후방보행차”로, “소모품”을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로 한정합니다)”으로 하고, 같은 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의지·보조기”를 “의지·보조기(다리 의지 소모품 포함)”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전·후방보행보조차”를 “전·후방보행차”로 하고, 같은 쪽 작성방법란 ④ 중 “전·후방보행보조차”를 “전·후방보행차”로 한다.

별지 제14호의6서식 앞쪽 ③ 보조기기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중 제3호 중 “의지·보조기”를 “의지·보조기(다리 의지 소모품 포함)”로 한다.

③ 보조기기	품목	
	구입일	구입처
	구입가격	기타

의지·보조기 다리 의지 소모품 맞춤형교정용신발 자세보조용구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면허)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업치료사		업소관리번호			
	[]자세보조용구 업소 대표자					
보청기 ([]15세 이하 양측)	착용 측	우[] 좌[] 양쪽[]	보청기 형태			
	평균순음청력역치 * 6분법 $[(a+2b+2c+d)/6]$ 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경우 a는 500Hz, b는 1000Hz, c는 2000Hz, d는 4 000Hz입니다.		보청기 착용 전 (처방전 결과)		보청기 착용 후 (음장검사 실시)	
			우	좌	우	좌
말소리 명료도(%)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는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와 그 산모의 1세 미만인 자녀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과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출산 전후 산모와 그 산모의 1세 미만 자녀의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라 한다)을 지원하되, 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원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 ②·③ (생략)

----- 진료
(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진료)-----

-- 약제·치료재료(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1. -----
----- 100만원
 2. -----
----- 140만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기준 등) ① ~ ③ (생략)

④제3항에 따라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14호의5 서식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호조차, 돋보기 및 망원경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1. · 2. (생략)

⑤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제4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만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

제25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 · 후

방 보 행 차

1. · 2. (현행과 같음)

⑤ -----
----- 소모
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로 한정한다)-----

출한다.

⑥ ~ ⑩ (생략)

-----.

⑥ ~ ⑩ (현행과 같음)